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
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수입·반입된 이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61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 권한의 위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불법 수입등 관련 자료의 제출(안 제15조)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불법 수입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거나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다목 중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수입등의 허가 또는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다음 각 목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거나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법 제30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반입하여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하였던 유입주의 생물

나.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등을 하여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하였던 생태계교란 생물

다. 법 제3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등을 하여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하였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제16조제1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 중 “수입·반입”을 각각 “수입등”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위반행위란 중 “수입 또는 반입한”을 “수입등을 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관련 자료의 제출) 환경부 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관련 자료의 제출)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경우	2.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u>수입 또는 반입 허가</u> 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여 보관하고 있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다. ----- ----- <u>수입등의 허가 또는 승인</u> ----- ----- -----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의2. (생 략)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다음 각 목 생물의 <u>수입등의 허가 또는 승인</u> 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의심되는 증

	<u>거가 있거나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가. <u>법 제30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반입 하여 보관하고 있는 유입 주의 생물</u> 나. <u>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등을 하여 보관하고 있는 생태 계교란 생물</u> 다. <u>법 제3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등을 하여 보관하고 있는 생태 계위해우려 생물</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6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 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 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①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 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u>수 입·반입</u> 허가	7의2. ----- ----- 수 입등 -----
7의3.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 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u>수</u>	7의3. ----- ----- 수

<u>입 · 반입</u> 신고의 수리 7의4. ~ 10. (생 략) ② 삭 제 ③ · ④ (생 략)	<u>입등</u> ----- 7의4. ~ 10.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연 락 처	010 - 3150 - 8121